

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078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9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폐지이유

- 가.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거 지자체 조례의 부과기준대로 시행되어 왔으나
- 나.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나고, 당초 취지인 결핵환자를 위해 수수료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
- 다.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,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」 폐지

3. 근거법규

- 가.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 제3항
- 나.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4. 7. 14. ~ 2014. 8. 4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078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4. 9. 5.(금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4. 9. 11.(목)
- 위원회심사 : 2014. 9. 17.(수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거 지자체 조례의 부과기준대로 시행되어 왔으나
-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나고, 당초 취지인 결핵환자를 위해 수수료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
-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,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」 폐지

4. 근거법령

-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 제3항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서대성)

-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취지는 수수료 징수 목적 보다는 환자로 하여금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을 통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짐
- 결핵관리사업이 2011년 4월부터 민간공동협력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결핵환자가 병·의원 이용시 입원비 및 생활보호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본인 부담금이 아주 낮아지긴 했지만 결핵환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실정임
- 비록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적다고는 하나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
-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조례폐지 추이를 보면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(운영)하여 오다 2011년 이후 부산, 대전, 울산 남구 등 11개 시도(구군)에서 본 조례를 이미 폐지하였으며,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따라서,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